

의안번호	제 347 호
의결년월일	1996. 5. 28. (제 44 회)

의결 사항	의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#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6. 4. 27.

#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347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6. 4. 27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-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장 직위에 대한 직급조정 승인(기획감사실장) 및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하는데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
- 내무과 감사계 분장사무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이관 조정
  - . 군행정의 감사
  - . 공무원의 비위조사
  - . 공직자 재산등록

### 3. 본 문

- 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'기획실'을 '기획감사실'로 한다.

제3조중 '기획실'을 '기획감사실'로 하며, 12호내지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군 행정의 감사
13. 공무원의 비위조사
14. 공직자 재산등록

제5조중 '11호, 12호, 16호'를 각각 삭제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실과의설치)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기획실</u>, <u>문화공보실</u>, <u>내무과</u>, <u>재무과</u>, <u>지적과</u>, <u>사회복지과</u>, <u>환경과</u>, <u>산업과</u>, <u>축산과</u>, <u>경제통상과</u>, <u>산림과</u>, <u>수산과</u>, <u>건설과</u>, <u>지역개발과</u>, <u>민방위재난관리과</u>를 둔다.</p>	<p>제2조(실과의 설치) ----- ----- <u>기획감사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<u>기획실</u>) <u>기획실</u>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~11(생략)</p> <p>12. (<u>신설</u>)</p> <p>13. (<u>신설</u>)</p> <p>14. (<u>신설</u>)</p>	<p>제3조(<u>기획감사실</u>) <u>기획감사실</u> ----- -----</p> <p>1~11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군행정의 감사</u></p> <p>13. <u>공무원의 비위조사</u></p> <p>14. <u>공직자 재산등록</u></p>
<p>제5조(<u>내무과</u>) <u>내무과</u>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~10(생략)</p> <p>11. <u>군행정의 감사</u></p> <p>12. <u>공무원의 비위조사</u></p> <p>13~15(생략)</p> <p>16. <u>공직자 재산등록</u></p> <p>17~23(생략)</p>	<p>제5조(<u>내무과</u>) ----- -----</p> <p>1~10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(<u>삭제</u>)</p> <p>12. (<u>삭제</u>)</p> <p>13~15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(<u>삭제</u>)</p> <p>17~23(현행과 같음)</p>